『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비예금상품 설명서 (고객 교부용)

본 상품은 가입시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비예금상품 설명서는 은행이 판매하는 비예금상품(변액보험) 중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향후 민원 분쟁조정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해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본 상품은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본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본 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규모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이해하였습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증권번호 : 1234567890

보험계약 청약서(별지)

■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계정에서 분리하여 **특별계정**(펀드)으로 **운용**하는 보험입니다.

-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투자 손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원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를 별도로 받습니다.**
- **가입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공제 및 그간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보증비용 차감 등으로 일반적으로 원금(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습니다.**
- 계약자가 가입시 **최저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이상**을 **최저한도**로 지급 **보증**합니다.
- 보험회사는 **최저보증**(최저사망보험금 등)에 따른 **보증비용**을 받으며,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

■ 보험료 세부내역 안내

[기준 : 기본형, 월납입형,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1,000,000원, 5년납] (단위:원)

납입보험료		1 년 ~ 5 년	
기본보험료 1,000,000 원	펀드투입금액	964,292~964,180 (96.4%~96.4%)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35,400 (3.54%)	
	위험보험료	308~420(0.0308%~0.0420%)	

※ 상기 사업비는 납입시에 차감하는 사업비 입니다. 보험계약기간 중 사업비가 매월 적립액에서 차감되며, 자세한 사업비는 해당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구분공시에 대한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제비용에 관한 사항

[기준 : 기본형, 월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 원, 5 년납]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5 년이내 기본보험료의 2.54%(25,40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1.0%(10,000 원) 납입기간 경과후: 기본보험료의 x.xx%(x,xxx 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308 % ~ 1.5525 %
특별계정운용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증권거래비용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06%
	기초펀드의보수,비용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23% (年 0.449%)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매월	적립액의 0.00416667% (年 0.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패널티	해지시	상품설명서 참조

[기준 : 기본형, 일시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00 원]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 개월~15 개월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0.1642% (164,20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2 개월~120 개월까지: 기본적립액*0.01666667% (연간 기본보험료의 0.3% 한도),121 개월이후 없음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6 % ~ 0.0310%
특별계정운용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증권거래비용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06%
	기초펀드의보수,비용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23% (年 0.449%)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매월	적립액의 0.00416667% (年 0.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패널티	해지시	상품설명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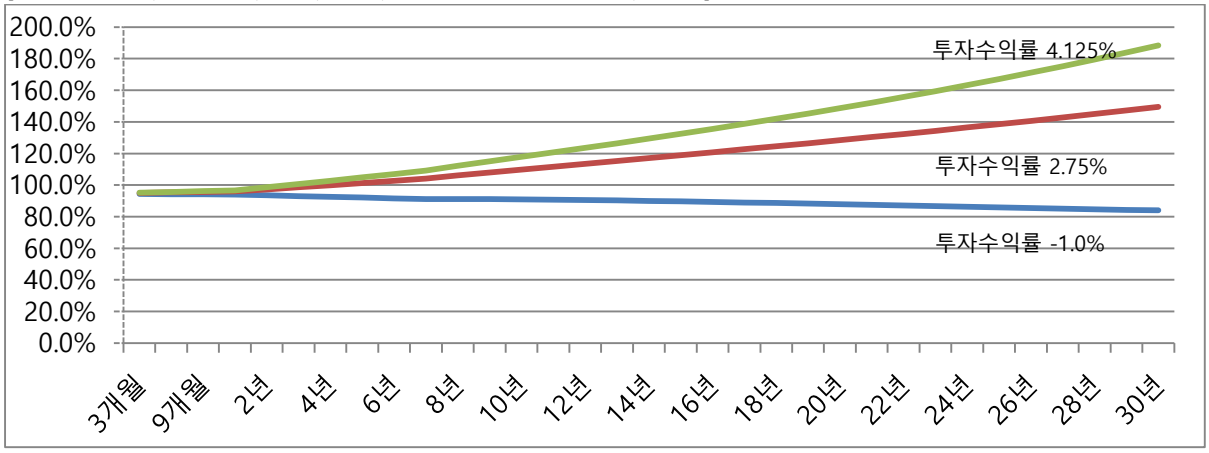
※ 위험보험료 : 80 세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다만, 가입나이가 80 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나이의 위험보험료로 표시함)

※ **제비용**의 **세부내용**은 이 청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률 예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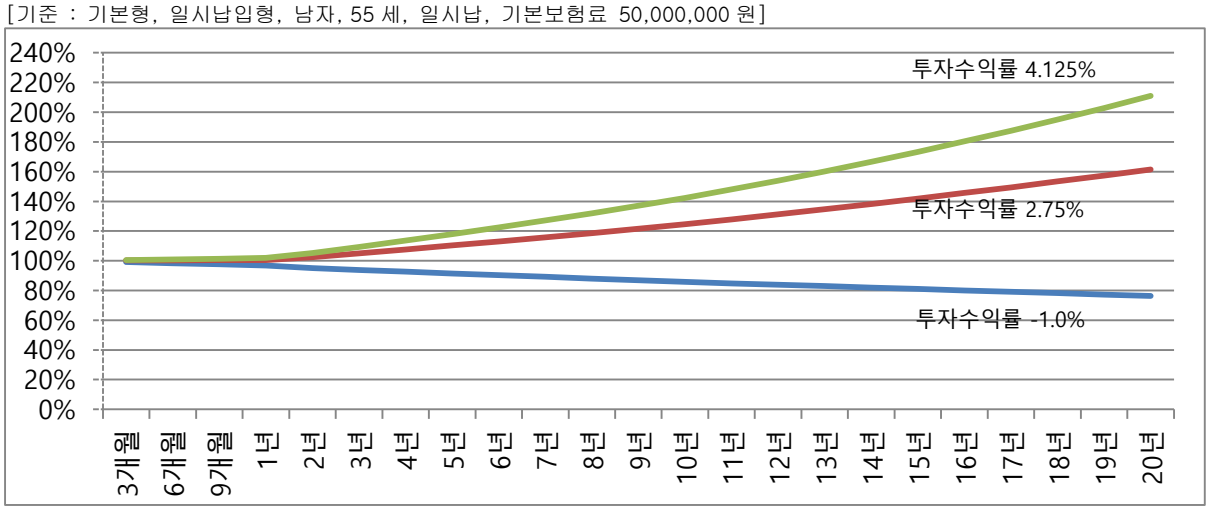
-월납일 경우

[기준 : 기본형, 월납입형, 남자, 40 세, 30 년납 기본보험료 300,000 원]



-일시납일 경우

[기준 : 기본형, 일시납입형, 남자, 55 세,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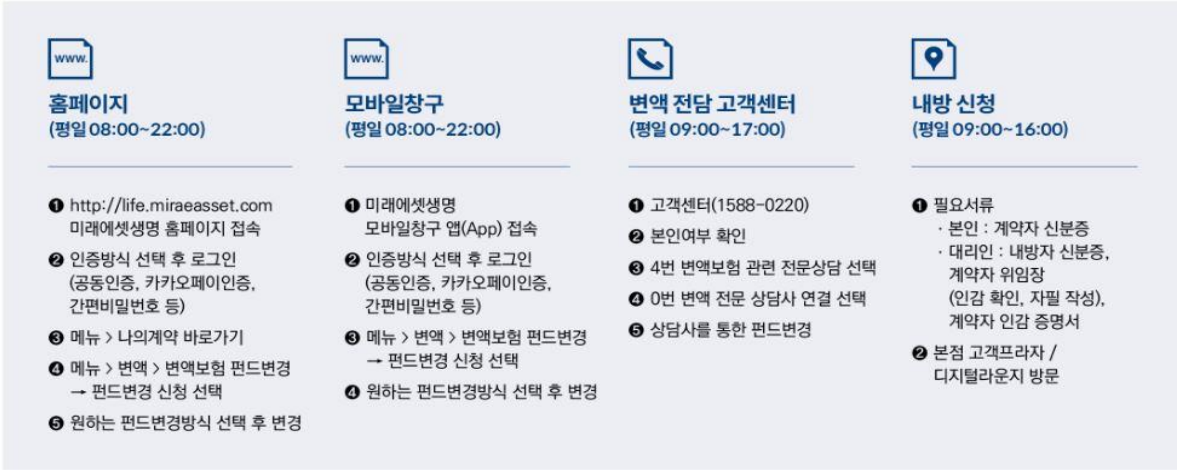


※ 계약자의 설계내용과 달리 상기 기준에 의한 대표계약으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가입당시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고객님을 위한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무)2504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상기 아이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 본문의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이 보험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되는 변액보험으로, 보험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반보험과는 다릅니다.**

구 분	일반보험	변액보험
사망보험금	보험가입시 정해진 금액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
해약환급금	경과기간에 따라 증가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
원금보장여부	원금보장	**원금손실가능**
예금자보호 여부	보호	**약관에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해 보호**

◦ **이 보험상품은 변액저축보험으로, 펀드상품이 아닙니다.**

구 분	펀 드	변액저축보험
가입목적	단기~중기의 자산증식	**중기~장기 자산증식, 노후대비**
사업비 구조	小	**大(계약초기)**
보장기능 유무	없음	**있음 (대신 위험보험료 차감)**

◦ 이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품으로** 일시적인 유동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이자발생액에 대한 비과세는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 분	적립금액	세금	적용금리
예금 및 저금	납입하신 원금 전액	이자소득세(15.4%) 부과	단리 또는 복리
저축성보험	납입금액에서 일부 차감*	비과세(10 년이상 유지시)	복리 (공시이율, 투자수익률 등)

* 차감되는 금액 :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1 **변액보험 원금손실에 관한 사항**

변액보험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만기)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이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일반계정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계정으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90 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 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입한 다음 달부터 고혈압으로 통원,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하여 수익자(대표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계약 전 알릴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 의! **변액보험 펀드 투입에 관한 사항**

변액보험은 고객님께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별계정 운용보수, 최저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금액에 투자수익률을 반영하여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계산됩니다.

* 최저보증비용은 최저보증옵션에 따라 보증비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가입한 최저보증옵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주 의! **변액보험 최저보증 사망보증옵션 유의사항**

변액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는 최저사망보증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금액은 사망보험금에만 적용됩니다.

설명서	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주 의! **예금자보호 관련 안내사항**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보호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설명서	5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보호제도

주 의! **변액보험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변액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중도 해지 시(36 개월 간 **보험료 10,800,000 원 납입**)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운용한 금액 총 총 **10,643,541 원을 돌려드립니다.**

*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 예시액은 특정 조건(기본형, 40 세 남자, 30 년납, 월납 30 만원, 투자수익률 2.75%)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향후 **투자수익률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서	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주 의! **보험료 감액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보험료 감액은 경제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보험료를 **감액**하더라도 **사업비**는 보험료가 감액된 비율만큼 **줄지 않아, 최초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해약)환급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사업비란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보험료 감액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등에 불이익 사항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서	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분	접수기관 연락처			
민원 · 상담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 소비자보호팀	☎ 1588-0220 ☎ 02-2287-9550	
		홈페이지	life.miraeasset.com	
		우편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팀	
	생명보험협회	콜센터	☎ 02-2262-6565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민원신청	https://www.fss.or.kr	
	1372 소비자상담센터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01 보험계약 개요

가. 보험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나. 모집자	OO 은행 OOO 지점 지점 보험판매인 음방울 (연락처 : 120-776-1445) (생명보험협회고유번호 : 0000000000000)
다. 보험기간	2025.09.01 부터 종신
라. 보험상품명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 무배당 2504 - [기본형] 월납입형
마.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자 : 코단정 · 피보험자 : 코단정(여,30 세)

바. 보험가입조건

보험종류	피보험자	가입 나이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납입 주기	보험료
주계약	코단정	30 세	종신	5 년	월납	1,000,000 원

사. 변액보험 선택 펀드 **※ 판매사별 가입시 선택 가능한 펀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펀드명	글로벌 MVP60	ETF 글로벌 MVP60	글로벌 MVP30	글로벌 MVP 주식형	ETF AI MVP(적극)	ETF AI MVP(중립)
편입비율	0%	0%	0%	0%	0%	0%
펀드명	ETF 글로벌 MVP 주식형	글로벌 컨슈머주식형	글로벌 성장주식형	A+차이나	선진마켓 주식형	글로벌헬스 케어주식형
편입비율	0%	0%	0%	0%	0%	0%
펀드명	유럽주식형	글로벌인덱스 주식형	미국주식형	인도주식형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주식형	ETF 글로벌 AI 테크
편입비율	0%	0%	0%	0%	0%	0%
펀드명	더나은미래 글로벌 ESG 주식형	[인덱스 ETF] 미국나스닥 100	[인덱스 ETF] 미국 S&P500	아시아주식형	일본주식형	글로벌 성장산업재
편입비율	0%	0%	0%	0%	0%	0%
펀드명	인덱스주식형	배당주식형	ETF 국내 신성장주식형	글로벌채권 매크로전략형	글로벌 MVP 채권형	이머징마켓 채권형
편입비율	0%	0%	0%	0%	0%	0%
펀드명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형 (환오픈형)	달러 MMF 형 (환오픈형)	미국국채형	국내채권형	MMF 형
편입비율	0%	0%	0%	0%	0%	0%
펀드명	글로벌 멀티인컴	글로벌인프라 부동산형	글로벌 커머더티	골드투자형	합계	
편입비율	0%	0%	0%	0%	100%	

※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투자결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고객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자산운용형태(펀드)를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오픈형 펀드는 환헤지를 하지 않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 위험이 존재하여 원화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가치 상승시(환율상승시) 환차익이, 환율하락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 선택하신 펀드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는 변액운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적립부분 순보험료 등 납입비중

[예시] 기본형, 월납입형, 40 세, 남자, 기본보험료 1,000,000 원, 5 년납
(단위:원)

납입보험료		1 년 ~ 5 년	
주계약보험료 1,000,000 원	펀드투입금액	964,292~964,180 (96.4%~96.4%)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35,400 (3.54%)	
	위험보험료	308~420(0.0308%~0.0420%)	

※ 상기 펀드 투입금액 납입비중은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투자(적립)재원 및 차감금액(사업비 및 위험보험료)을 경과기간별로 예시한 내용입니다.

※ 펀드투입금액 (투자(적립)재원)은 주계약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가.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주의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청약 철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안내 방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발송 후 아래 전화번호로 철회 신청 사실을 알리면 더욱 신속하게 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이후(청약철회 신청서 발송일 포함)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화신청 : ☎1588-0220
▶ 우편송부 : (0733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4 층(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연금지원팀
▶ 홈페이지 접속 : life.miraeasset.com (로그인 > 메뉴 > 보험 > 계약변경 > 청약철회)
▶ 모바일앱 접속 : 미래에셋생명 M-LIFE(로그인 > 메뉴 > 계약변경 > 청약철회)
▶ 가까운 영업점 위치 : 445-19 산남 양금 종눈홍 OO 은행 OOO 지점 (전화:120-776-1445)

나.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변경으로 인한 감액 청구

보험계약을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신청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 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변경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발생 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주의

※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 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 (해당 사항에 체크(✓))
  -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증빙·참고자료 첨부 必)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드립니다.

[피보험자의 권리]

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월납입형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주계약 해약환급금(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금액을 충당할수 없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미공제된 월공제금액 이상의 금액)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으로서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및 자동인출서비스에 따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였던 내역이 없고,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을 경우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습니다.
☐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한사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의 해지•해제•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해제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 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무효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
***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
☐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한 계약

나.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계약자 적립액 적용이율 (주계약 기준)
이 보험의 최저사망 보장부분에 적용된 이율은 연복리 2.00%이며, 적립부분은 특별계정 운용실적(투자 수익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기본형, 월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 원, 5 년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A)	특별계정 투입금액누계	투자수익률 -1.00% 가정시(순수익률 -1.05%)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2.75%) 가정시(순수익률 2.7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 1.5(4.125%)가정시(순수익률 4.075%)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3 개월								
6 개월								
9 개월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5 년								
20 년								
25 년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 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액에서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등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 됩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하고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지 않거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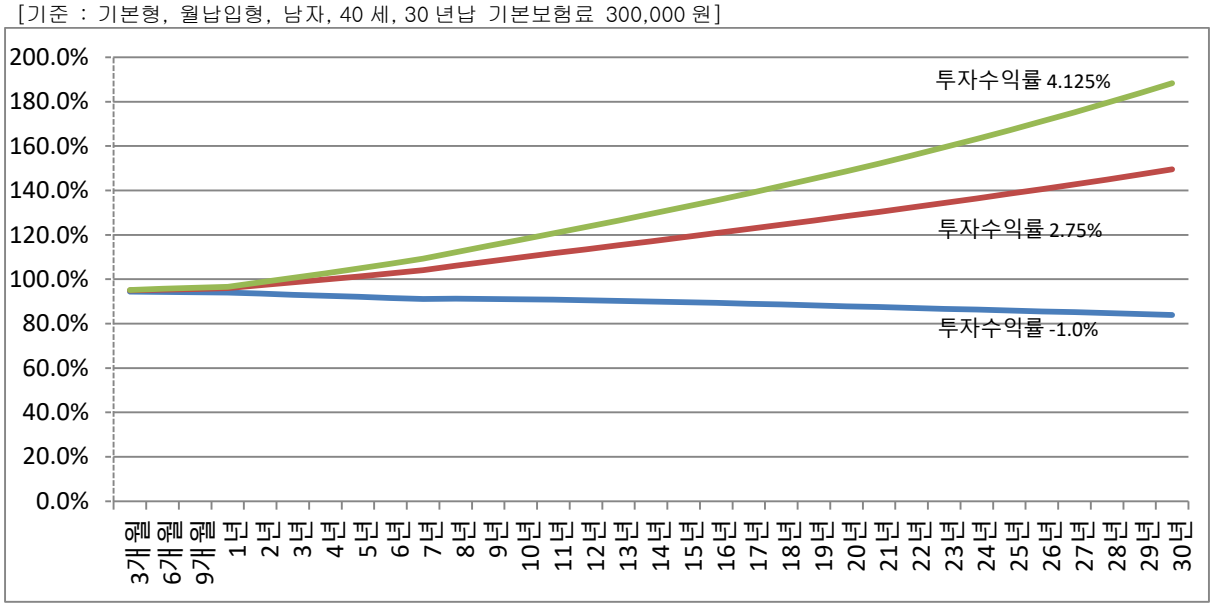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1.0%, 감독규정 제 1-2 조제 13 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75% 및 동 이율의 1.5 배인 4.1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는 2.75% 투자수익률 가정시의 금액이며, 일시납입형의 경우 투자수익률에 따라 값이 변동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 월말 기준 직전 12 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 및 자산구성내역 등은 당사홈페이지(life.miraeasset.com) "공시실 ⇒ 상품공시 ⇒ 변액펀드 MAP"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비교·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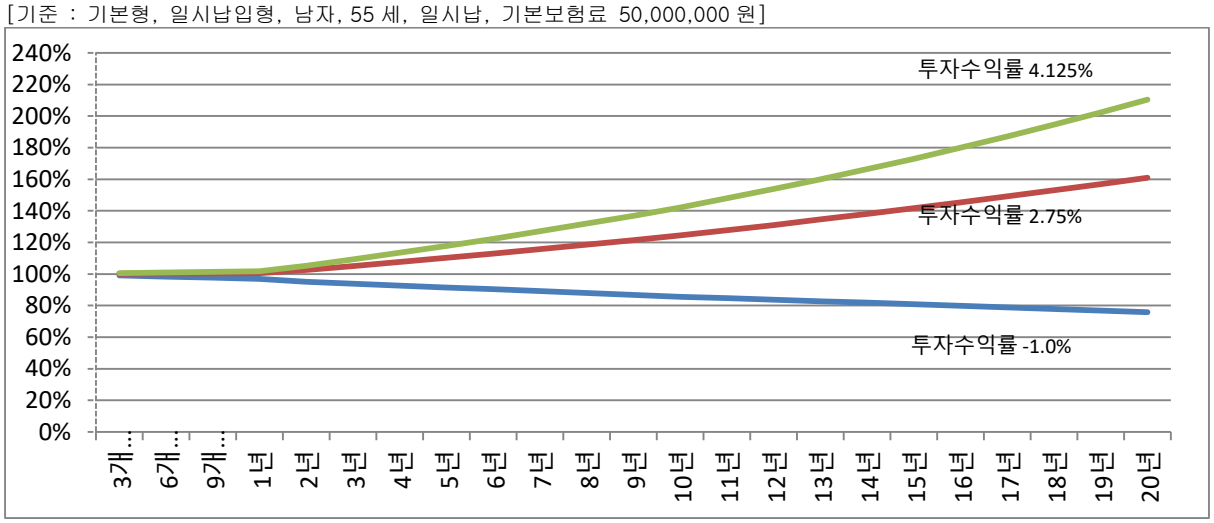
-월납일 경우

[기준 : 기본형, 월납입형, 남자, 40 세, 30 년납 기본보험료 300,000 원]



-일시납일 경우

[기준 : 기본형, 일시납입형, 남자, 55 세,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0,000 원]



※ 계약자의 설계내용과 달리 상기 기준에 의한 대표계약으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라.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중도인출시기 : 계약일 이후 1개월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연 12회까지 계약자 적립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인출
□ 중도인출수수료 : 1회당 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 중 적은 금액(단,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조건(기본형의 경우) :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①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의 50%이내
② 월납입형 :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주계약 월납 기본보험료의 3배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 이상 / 일시납입형 :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일시납기본보험료의 3%와 200만원 중 큰 금액」이상
□ 추가납입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②번 조건에 관계없이 인출가능 합니다.
단,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약관 제50조(자동인출서비스)에서 정한 "자동인출자금"을 포함함)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적립액이 적어져 적립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사망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중도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만기시 수익자 변경	상해,사망시 수익자 변경
방문접수	- 계약자신분증 - 계약자와 변경후 만기시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내방인 전원 신분증 - 피보험자와 변경후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편접수	-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류, 동의서 - 계약자신분증, 인감증명서(+신청서인감날인) - 변경후 수익자 신분증, - 계약자와 변경후 만기시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관계자 변경신청서류, 동의서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신청서인감날인) - 변경후 수익자 신분증, - 피보험자와 변경후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공서 발급서류 : 발급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사용용도(회사명 및 신청항목,신청내용 등)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본인서명으로 인감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 구비서류는 사례별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센터(☎1588-02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품별 특이 사항

■ 상품설명서는 이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보다 해약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기본보험료 납입시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적립되므로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즉시이체, 자동이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 신규가입과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시 장·단점 비교]

구분	기존계약 외 신규가입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
장점	- 계약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상품가입 가능 - 현재 재무상태에 맞는 가입플랜 재설정 가능	- 신규가입 대비 사업비가 저렴하여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점	- 기존계약의 추가납입 활용 대비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기존상품의 운용방법 내에서만 활용 가능 - 새로운 상품의 서비스 기회 없이 기존상품의 환급률 개선효과만 제공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 활용시 수수료 등 공제금액 비교
*** 기본형, 남자 40 세, 30 년납, 기본보험료 월 30 만원 기준**

구분	1~7 년	8~30 년
기본보험료 활용	5.4400% ~ 5.4558%	1.0391%~1.3630%
추가납입활용	추가납입보험료의 0%	

※ 본 수수료 등 공제금액은 대표계약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상품의 수수료 등 공제금액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구분공시(수수료 안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납입형일 때]

○ 기본형과 보장강화형의 비교

보장강화형은 기본형에 비해 초기 사망보험금이 높은 대신,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 높아 기본형에 비해 초기 환급률이 낮을 수 있으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월납입형, 남자, 40세, 10년납, 월 30만원, 투자수익률2.75%]

경과기간	환급률		사망보험금	
	기본형	보장강화형	기본형	보장강화형
1 년	96.7%	95.7%	497 만원	7,200 만원
5 년	102.0%	100.6%	1,986 만원	7,200 만원
10 년	110.4%	108.4%	4,125 만원	7,200 만원
20 년	142.9%	136.8%	5,294 만원	7,200 만원
40 년	239.7%	218.4%	8,777 만원	8,083 만원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기본형 월납입형에 한함)

※ 월납입형(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아래에서 정한 '납입일시중지 가능 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 회 (1 회 신청당 12 개월을 최고 한도로 하며, 월단위 신청 가능)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동안 제 2 회 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액(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기타비용) 제외) 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된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가능 시점'은 2 년납-계약일로부터 1 년이 지난 이후, 3 년납-계약일로부터 1 년 6 개월이 지난 이후, 4 년납-계약일로부터 2 년이 지난 이후, 5 년납-계약일로부터 2 년 6 개월이 지난 이후, 6 년납-계약일로부터 3 년이 지난 이후, 7 년납-계약일로부터 3 년 6 개월이 지난 이후, 8 년납-계약일로부터 4 년이 지난 이후, 9 년납-계약일로부터 4 년 6 개월이 지난 이후, 10 년납~30 년납-계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종료 제도 (기본형 월납입형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½이상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의 납입을 완전 종료하는 제도(단, 5 년납 미만 또는 납입일시중지 기간 중일 경우 신청 불가)

<회사가 정한 사유>

1. 퇴직 및 사업장의 폐업 등
2. 3 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의 발생
3. 계약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4. 계약자가 (조)부모, 피보험자가 (손)자녀인 계약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제도 (기본형 월납입형에 한함)

※ 신청접수기간 : 납입기간 종료일 1 년전 계약해당일부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 연장가능기간 : 가입시점에 선택한 납입기간의 두배까지 연단위로 연장가능(단, 최초 납입기간을 포함하며, 최대 12 년 한도)
※ 신청횟수 : 최대 3 회

■ 보험료 추가납입

※ 추가납입 가능기간 : 제 1 회 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 된 후부터 아래시점까지 가능합니다.
- 월납입형 : 계약자는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하며, 중도인출(자동인출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의 합계를 총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일시납입형 :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자동인출금액 포함)의 합계를 총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 한도

- 월납입형 :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경과월수(선납보험료 포함)-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까지 중도인출(자동인출금액 포함)한 금액의 합계(다만,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 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일시납입형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

※ 추가납입시 금액은 [납입일 + 제 2 영업일] 기준으로 투입됩니다.

■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 기본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적립액의 0.05%)

■ 자동인출 서비스

※ 계약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이하『자동인출금액』이라 한다)만큼 중도 인출하여 자동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자동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6 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가능금액 :
- 기본형 월단위 인출인 경우 월납입형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 일시납입형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1.0%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 기본형 연단위 인출인 경우 월납입형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1% ~ 30% 이내, 일시납입형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1% ~ 10%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주기 및 지급일: 매월 또는 매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최초 신청일을 최초 지급일로 함 (지급일 기준가 적용)

※ 자동인출서비스는 상품의 중도인출 기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음. 단, 인출수수료 는 면제, 연간 중도인출횟수에 불포함

■ 목표수익 자동이전 선택

※ 목표수익률 선택 : [Step-Up형] 3%~10% 중 1% 단위로 선택 [Target형] 105%~200% 중 5% 단위로 선택

※ 적립액자동이전

[Step-Up형] 신청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계약자적립액(다만, 목표수익 이전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 제외)의 수익을 매월 평가하여 목표수익을 달성할 때마다 계약자적립액(다만, 목표수익 이전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 제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 펀드별 수익의 비율대로 「목표수익 이전펀드」로 이전

* 목표수익 =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목표수익률

[Target형] 신청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계약자적립액을 매월 평가하여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자적립액(다만, 목표수익 이전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 제외)의 전액을 「목표수익 이전펀드」로 이전

※ 신청가능시기 : [월납입형]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부터 [일시납입형]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 목표수익 이전펀드 : 국내채권형, MMF형, 글로벌MVP30

※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및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한 경우 목표수익 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 옵션에 관한 사항

※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펀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투입펀드로 선택하여야 하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을 5%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2 회 범위 내에서 투입펀드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펀드 변경 시 수수료 없음 (2025년 09월 현재)

※ 환오픈형 펀드는 환헤지를 하지 않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 위험이 존재하여 원화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가치 상승시(환율상승시) 환차익이, 환율하락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 적립액 이전
- 펀드별 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 12회의 범위 내에서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09월 현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적립액이전은 『변경신청일 + 제 2 영업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펀드자동재배분
- 2개 이상의 펀드 선택 시, 일정한 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로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 재배분 할 수 있어 계약자적립액 운용이 가능합니다.(연 4회 이내 변경 가능)

※ 평균분할투자
- 추가납입보험료 및 일시납입형의 기본보험료를 MMF 형 펀드로 전액(부가보험료 제외) 투입 후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펀드자동재배분 및 평균분할투자는 동시에 운용불가

■ 투자실적연금전환특칙

※ 연금전환 가능시점 : [월납입형] 계약일로부터 min(납입기간, 12 년) 지난 후 [일시납입형] 계약일로부터 2 년 지난 후

※ [기간확정형] 연금지급기간 : 5 년 이상 연단위 기간 / 연금지급주기 : 1 개월, 3 개월, 6 개월, 1 년

※ [균등분할형] 연금지급주기_지급한도 : 1 개월_1.5% / 3 개월_5% / 6 개월_10% / 1 년_20%

■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 연금전환 가능시점 : [월납입형] 계약일로부터 min(납입기간, 12 년) 지난 후 [일시납입형] 계약일로부터 2 년 지난 후

※ `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연금액은 전환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연금전환특약 무배당'으로 전환할 때 전환당시의 특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선지급서비스 특약

※ 사망보험금 선지급 : 의료기관 진단 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12 개월 이내 라고 판단한 경우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 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1 억원까지(다만, 1,000 만원 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함) 선지급

▣ 상기 '상품별 특이사항'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회사홈페이지(life.miraeasset.com) 상품공시실에 게시된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 공제금액 구분공시에 대한 사항

수수료 안내표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기본형, 월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 원, 5 년납]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5 년이내 기본보험료의 2.54%(25,40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1.0%(10,000 원) 납입기간 경과후: 기본보험료의 x.xx%(x,xxx 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308 % ~ 1.5525 %
특별계정운용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증권거래비용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06%
	기초펀드의보수,비용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23% (年 0.449%)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매월	적립액의 0.00416667% (年 0.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기준 : 기본형, 일시납입형, 남자, 40 세, 기본보험료 100,000,000 원]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 개월~15 개월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0.1642% (164,20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2 개월~120 개월까지: 기본적립액*0.01666667% (연간 기본보험료의 0.3%한도),121 개월이후 없음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6 % ~ 0.0310%
특별계정운용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40% (年 0.510%)
	증권거래비용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年 0.006%
	기초펀드의보수,비용	매일	글로벌 MVP30 : 적립액의 0.00123% (年 0.449%)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매월	적립액의 0.00416667% (年 0.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위험보험료 : 80 세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다만, 가입나이가 80 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나이의 위험보험료로 표시함)
※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 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24.1.1~2024.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 기초펀드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연도(2024.1.1~2024.12.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 상기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제외)은 해당 (기초)펀드 적립액에 대하여 연간 차감되는 비율로 매일 차감되는 비율은 상기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제외)을 365 로 나눈 값임
※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 비용 은 해당 특별계정(펀드) 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해약공제비용

경과시점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7 년 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없음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없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1 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 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면제)

아. 경고문구 등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04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가. 보험금 지급예시(기본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월납입형] 월납 기본보험료의 50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일시납입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계약자적립액이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기본형]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으로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05%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인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및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는 제외)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바랍니다.

변액보험 보험금 예시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사망보험금		
		투자수익률 -1.00% 가정시(순수익률 -1.05%)	투자수익률평균공시이율(2.75%) 가정시(순수익률 2.70%)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 × 1.5(4.125%)가정시(순수익률 4.075%)
3 개월				
6 개월				
9 개월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5 년				
20 년				
25 년				

※ 사망보험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상기 예시된 투자수익률 가정, 금액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 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 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에 "사망보험금"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은 기본형의 경우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0.05%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인출합니다.**

[보험나이 안내]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 기재 사실을 근거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사례

A 씨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90 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 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입한 다음 달부터 고혈압으로 통원,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뇌출혈이 발생되어 사망하여 수익자(대표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계약 전 알릴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사례

A 씨는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OO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 씨가 사망한 뒤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③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A 씨는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일 이후 유가족이 A 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망일로 부터 3 년이 한참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참고)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 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다.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보험금 청구 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앱, 팩스, 우편, 본점고객프라자 및 디지털라운지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모바일앱 : 금액 제한없음
② 팩스 : 500 만원 이하
③ 우편, 방문 : 금액제한 없음(1,000 만원 이하 사본 제출 가능)
· 홈페이지, 모바일앱, 팩스 접수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규정에 의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당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받은 날(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 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① 당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손해사정서의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드리며,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
· 지급 지연 시, 그 사실을 고객님이 요청하신 방법(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드리고,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고객센터(☎1588-0220)로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의료심사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상법 제662 조에 의거 보험금청구권을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청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당사의 지급심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 1588-0220)로 유선 통보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및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9 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 차 13 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 (우편번호 : 07208)

○ 보험금심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보험금운영팀 (문의처 : 고객센터 1588-0220)
· 담당자는 접수완료 후 확정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담당 FC,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보험계약 및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안내 내용
· 상기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며,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에 접속하시면 보유계약 확인, 보험금 청구, 청구서류 안내 및 진행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05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

나. 주요 민원사항

[민원사례 1]

유형	해약환급금 과소 관련
내용	A 씨는 보험가입 이후 1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개인사유로 해지하고자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던 중 기대한 것 보다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
소비자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2]

유형	변액보험상품의 특징 및 투자손실 미안내 관련
내용	A 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투자상품(펀드)으로 권유 받았지만 변액보험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으며, 향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며 민원제기
소비자 유의(참고)사항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 및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민원사례 3]

유형	중도인출로 인한 환급금 감소 관련
내용	A 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중도인출을 이용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인출로 인하여 가입할 때 안내 받은 해약환급금 보다 환급금이 감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제기
소비자 유의(참고)사항	가입할 때 안내 받은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현재 기준(적립이율, 투자수익률 등)의 미래 예상금액으로서 적립이율 및 투자수익률 변동 또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 등의 사유로 해지 또는 만기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또한, 중도인출의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투자수익률)만큼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4]

유형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부실, 불충분
내용	민원인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서 모집자에게 상품설명을 듣고, 청약서 서명 이후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등 주요 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 이후 수년이 지난뒤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원했던 상품내용과 달라 상품해지 및 납입보험료 반환 민원을 제기
소비자 유의(참고)사항	민원인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상품주요 설명 확인 내용에 덧쓰기,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해피콜)**에서 상품주요 내용과 관련된 확인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바 있음이 확인되며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 고객은 상품가입 시 서류를 주의하여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하며, 해피콜 시에도 가입상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담사의 질의에 응답함으로써 가입한 상품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34 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등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험 청약시 완전판매(자필서명, 상품설명,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수령 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스마트(모바일, 홈페이지), 유선 해피콜을 통해 진행되는 필수 확인절차.

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접수기관 연락처			
민원·상담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 소비자보호팀	☎ 1588-0220 ☎ 02-2287-9550	
		홈페이지	life.miraeasset.com	
		우편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팀	
	생명보험협회	콜센터	☎ 02-2262-6565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민원신청	https://www.fss.or.kr	
	1372 소비자상담센터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06 기타 유의사항

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필수 고지의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아래의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구분	고지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권한 및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 금융소비자로부터 청약,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명의 및 업무내용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명의 및 업무내용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포함) ○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중개하는지 여부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	**[모든 금융상품]**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해당임원이나 직원이 대리·중개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직접판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 ○ 금융소비자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 보유・관리한다는 사실 ○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보장성 상품]** **※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안내** ○ 보험설계사의 이력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과 그 법인에서의 위탁업무 수행기간을 포함) ○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의 이력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조치의 이력 **[투자성 상품]** ○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표지게시 및 증표제시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① 법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 포함)를 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개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 포함)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 ③ 표지 및 증표의 확인 시기에 대한 상품 권유 전에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 전화 권유 또는 전자금융거래 등을 통한 비대면의 경우에도 권유 전에 표지 및 증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나.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 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 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회사는 자동이체,즉시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 보험계약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된 계약의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후에는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바.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사.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를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기간(계약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대리 자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인정받은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상품(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지정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계약**-

이 보험계약(가입하신 보험계약 및 특약가입을 포함)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범위**

①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 하거나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 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 인 지정 시 대표가 되는 지정대리청구인(이하,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해야 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다수일 경우 모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변경 지정) 방법**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계약유지) 중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재 지정(지정대리청구인에 변동(이혼, 사망 등) 발생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지정대리청구인 신청(변경) 연락처 : 0000 - 0000

□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 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으로 선고 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페이지** (https://www.fss.or.kr)의 **"상속조회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보험가입자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가입내역을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차. 방카슈랑스 관련 유의사항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 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 변액보험에 관한 사항

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변액보험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 별도로 제공되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에서는 매일의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및 수익률, 매월 말 자산구성현황, 특별계정 보수 및 비용, 운용회사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과 최근 가격변동 등을 직접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마다 사업비율과 위험보장비용, 최저보증비용 등을 매달 공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원하는 예상 펀드수익률을 선택시 해당 상품의 펀드 예상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변액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1588-0037)**

☐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일부만 특별계정에 투자됩니다.

☐ 연간 12 회 이내에서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만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 인출시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간 **12 회에 한하여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5 년 09 월 현재)

☐ 이 상품은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 월공제금액이 공제**되므로, 납입기간이후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월공제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펀드변경 방법 및 절차 안내

【모바일 창구】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미래에셋생명]을 검색하여 [미래에셋생명 M-LIFE] 어플리케이션 다운
  - 로그인>펀드변경>일괄변경신청,투입비율변경신청,적립액이전신청, 자동재배분신청 중 원하는 변경 선택>변경사항을 선택하여 실행

【홈페이지】

- 회사 홈페이지 접속(life.miraeasset.com)
- 로그인>펀드변경>일괄변경신청,투입비율변경신청,적립액이전신청, 자동재배분신청 중 원하는 변경 선택>변경사항을 선택하여 실행

【고객센터】

- 고객센터 [☎1588-0220] 전화
- 고객이 전화로 펀드변경 신청시 전문 상담사가 상담 진행

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

※ 변액보험 계약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됩니다.
2. 이 상품은 단기보유목적의 **투자신탁상품(적립식 펀드 등)이나 예금, 적금이 아니라,** 보장기능이 있는 **장기**투자 목적의 자유적립식 **보험**상품입니다.
3.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 중 수수료안내표에 기재된 보험관계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에 **투자**, 운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소요 됩니다.
▶ 투자수익률 평균공시이율(2.75%)가정시 : **최초 원금도달기간**은 가입 후 약 **4년**이며, 그 후 연령증가로 위험보험료가 늘어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최초 원금도달기간은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4.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5. 이 보험계약은 **최저 보증이율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받고**, 그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7. 보험료 납입기간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하 월공제금액)이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어 해약환급금이 **감소** 할 수 있으며, 월공제금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주요내용 확인서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래 각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히 관련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자필서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약의 경우 별도 서명없이 계약에 대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1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 01 보험계약 개요 참조 ⇨ 04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참조 ■ 예 □ 아니오
2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참조 ■ 예 □ 아니오
3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지 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사업비 차감** 등으로 인해 **납입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참조 ■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 보험료 전액을 환급
4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참조 ■ 예 □ 아니오
5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 02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참조 ■ 예 □ 아니오
6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 지정방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 0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참조 ■ 예 □ 아니오
7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이 상품은 투자성격이 있는 보험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 07 변액보험에 관한 사항 참조 ■ 예 □ 아니오
9	이 상품은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빼고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투자한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계약체결비용 등을 빼고 투자한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 07 변액보험에 관한 사항 참조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을 빼고 펀드에 투자 □ 보험료 전부를 펀드에 투자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제 96 조 2 항) 단, 당사의 제지급 처리 기준 및 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등은 통신수단에 의한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 상품설명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을 참조하셔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계약자께서는 2025.00.00 에 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보호 또는 비보호)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OO 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읽어보시고 이해하였음을 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및 보험가입서류 수령 확인서

보험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자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완전가입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상품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고 이해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V
■	보험료 (월납입형은 월납 보험료, 일시납입형은 일시납 보험료)		
■	보험상품의 종류와 주계약의 보장내용		
■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	청약철회, 품질보증, 계약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 전 알릴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	예상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및 산출근거 (기간별 해약환급금, 원금손실가능성, 최저보증관련 사항 등)		

상품내용확인	다음의 주요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가입하신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름	V
■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지 않고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운용됨	V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V
■	최저보증하는 보험금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V
■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 한도, 횟수, 인출가능 기간 및 비용 공제	V
■	보험료 추가납입의 효과 및 비용공제	V

보험가입서류 전달/수령 (※ 보험증권은 계약성립시 지체없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험가입서류	확인	보험가입서류	확인	보험가입서류	확인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V	보험약관	V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포함)	V
운용설명서	V				

※ 보험약관을 모바일로 수령하신 경우 알림톡(또는 LMS 문자)로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시어 약관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상기 보험계약의 청약과정에서 상품의 주요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았으며,상기 보험가입서류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계약자		(전자서명)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 보험차익 세제 관련 요약

※ 하기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25 조, 소득세법시행규칙제 12 조 2 를 근거로 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비과세 요건 요약 내용(각 계약형태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①일시납 보험계약 (납입기간 5 년 미만 포함)	○ 10 년이상 유지 ○ 계약자 1 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1 억 이하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 년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기 전 확정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됨
②월적립식 보험계약	○ 10 년이상 유지, 5 년이상 납입 ○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 개월이내**,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1 배이내 증액 포함)할 것 ○ **비과세 한도는 1 인당 연간 월 평균 보험료가 150 만원 이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
③ 종신형연금계약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 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 ○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사망 시(기대여명 연수 이내로 지급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보증기간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중도 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 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해당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이 ①계약기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①의 계약으로 봅니다. 또 ③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계약이 ①이나 ②기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①의 계약이나 ②의 계약으로 봅니다.
기타 과세조건	□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이거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 년이 되기 전에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됨
계약자 변경	□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시부터 비과세기간(10 년) 재산정

계약자당 저축성보험(5 년납 이상 월납) 월보험료 150 만원 및 저축성보험(일시납 및 5 년납 미만) 1 억원한도 초과시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동 과세되는 보험차익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융소득[`13 년 시행 1 인당 2 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의 과세위험도 있습니다

(별지)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 아래 표의 아이콘 및 설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아이콘	설명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최저보증 **보험금만보호** [1 인당 최고 1 억원]	- 예금자보호 상품(변액보험) :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 인당 "1 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유형	**저축성 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 저축성보험 : 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실적배당형 상품	**실적배당형** [원금손실가능] **수익률 변동**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이 있음
청약철회기간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 일** 이내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단, 만 65 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 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원금도달기간	**원금도달기간** [투자수익률 2.75%가정] **약 4 년** [납입보험료 기준]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도달하는 예상기간으로 투자수익률에 따라 원금도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적용금리 변경에 따라 원금도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연이하 기간은 올림처리 예: 9 년 6 개월 → 약 10 년)
해약환급률	**해약환급률** [투자수익률 2.75%가정] **3 년 : 99.7%** **5 년 : 102.0%** **7 년 : 106.3%** [납입보험료 기준]	-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률로 투자수익률에 따라 해약환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변액보험 보증옵션	**변액보증** [사망사고발생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납입보험료 100%]	- 기본형 최저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함

금융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의무 확인서

계약자		증권번호	

동 확인서는「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만 65 세이상인 고령자"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위험 등 상품설명을 강화하여 적합한 구매권유를 하기 위함입니다.

만 65 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되시는 고객께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변액보험상품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용하며, **보장기능이 있는 장기투자 목적**의 자유적립식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하고,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계정 재산의 운용·수탁 등을 위한 **보수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하 월공제금액)이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어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이 월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험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요 내용만 기재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며,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전자서명)

보험차익 과세 확인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기준에 의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2) 고객님께서 청약하신 보험계약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향후 보험차익 발생 시 과세 적용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사항

상품명			
증서번호		**계약일자**	년 월 일
계약자주민번호		**계약자명**	

보험차익 세제 기준 요약

※ 하기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소득세법시행규칙제12조2를 근거로 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계약 형태	비과세 요건 요약 (각 계약 형태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① 일시납 보험계약 (납입기간 5년미만 포함)	○ 10년이상 유지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이하 ○ 다만,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됨.
② 월적립식 보험계약	○ 10년이상 유지, 5년이상 납입 ○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이내,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1배이내 증액 포함)할 것 ○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연간 월 평균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
③ 종신형연금계약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 ○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사망 시(기대여명 연수 이내로 지급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보증기간내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중도 해지 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 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해당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이 ①계약기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①의 계약으로 봅니다. 또 ③의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계약이 ①이나 ②기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①의 계약이나 ②의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자 본인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자당 저축성보험(5년납 이상 월납) 월보험료 150만원 및 저축성보험(일시납 및 5년납 미만) 1억원한도 초과시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됨을 설명들었으며, 동 과세되는 보험차익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융소득['13년 시행 1인당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의 과세위험도에 대해 설명들었습니다.

● **상기 계약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 적용 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계약자(본인) : (서명·날인)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서명·날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과세 적용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험판매인 _____ (서명)